

최종보고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환경실태 2011~2013

2014.5.7

심상정 의원실

연구수행기관

서울남부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의 미래 

박준도 정책기획팀장

[차례]

요약	7
1. 서론 – 공단 50년	8
1) 제조업 수출산업단지에서 IT·생산자서비스업이 주도하는 디지털단지로	8
2) 저임금 일자리로 하향평준화한 공단	10
3) 공단 50년, 노동자 50년?	11
2. 구로·금천 노동실태 및 2014 임금인상요구안 조사 개요	12
1) 조사 목적	12
2) 조사 방법	12
3) 조사결과	14
* 용어정리 및 데이터 보정	17
3. 인구학적 특징과 변화	23
4. 노동시장의 특성과 변화	25
1) 업종과 직종	25
2) 종사상 지위와 비정규직	28
5. 노동조건 특징과 변화	30
1) 임금과 노동시간, 시간당 임금	30
2) 임금과 생활 수준	34
3)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	34
6. 2011년, 2013년 실질임금 추이	36
7.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자의 임금인상 요구	38
8. 소결 – 노동자 50년	39
1) 저임금 구조가 안착하고 있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39
2) 2년간 실질임금 0.9% 인상, 사실상 정체된 임금	40

3) 공단의 장시간 노동, 최소 생계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저임금 때문	40
4) 대안	40
참고문헌	44

[표와 그림]

<표 1-1> 2013년 노동환경실태조사 응답자 분포	14
<표 1-2> 2011년 노동환경실태조사 응답자 분포	15
<표 2-1> 응답자의 업종별 성별 분포 (2013)	15
<표 2-2> 응답자의 업종별 성별 분포 (2011)	16
<표 3> 전국사업체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임시·일용직 비율 비교 (2009)	17
<표 4> 노동환경실태조사 인구학적 특성	23
<표 5> 성별 세대비 변화	23
<표 6> 가족형태 변화	24
<표 7> 성별세대별 가족형태 변화	25
<표 8> 공단의 업종변화	26
<표 9> 공단의 직종 변화	26
<그림 1> 남성과 여성의 직종별 세대비	27
<표 15-1>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분포비	32
<표 15-2> 직종별 임금분포비	32
<표 15-3> 업종별 임금분포비	33
<표 16> 세대별 시간당 임금수준	33
<표 17-1> 임금과 생활수준	34
<표 17-2> 세대별 임금과 생활수준	34
<표 17-3> 가족수별 임금과 생활수준	34
<표18>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	35
<그림 5> 시간당임금 대비 노동시간	35
<표 19-1> 2011년, 2013년 실질임금인상률 (성별, 세대)	36
<표 19-2> 2011년, 2013년 실질임금인상률 (업종)	36
<표 19-3> 2011년, 2013년 실질임금인상률 (직종)	37
<표 19-4> 2011년, 2013년 실질임금인상률 (임금구간)	37
<표 20>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자의 임금인상희망액	38
<표 21> 정준영(2013), 「가계부채 문제와 개인회생·파산제도의 합리적 운용방안」, 『가계부채와 개인회생·파산제도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심포지엄』, 법원행정처	38
<표 21>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자의 2015년 법정최저임금 희망액	39
<그림 6> 박종규, 「임금없는 성장과 근로소득 분위별 실질임금 추이 및 시사점」, 『주간 금융브리핑』, 23권 2호	40

<요약>

본 보고서는 2013년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진행된 『구로·금천 노동실태 및 2014년 임금인상요구안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아울러 2011년에 진행된 동일한 조사와 비교하여 2년여 기간 동안 노동시장과 노동조건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결과 지난 2년여 동안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졌다는 명시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였다. 반대로 임금이 하향평준화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발견할 뿐이었다. 신규산업인 생산자서비스업의 임금구조가 제조업 임금구조와 유사해지고 있고, 저임금 중위임금 노동자비율은 느는 반면, 상위 10%, 중상위, 중간평균 임금 구간대의 노동자 비율은 줄었다. 법정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줄긴 했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을 지킨 결과일 뿐이다.

실제로 2011년과 2013년의 실질임금을 비교해보면 고작 0.9%밖에 안 올랐고, 그나마도 법정최저임금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일 뿐이다. 사무직과 기술직은 실질임금이 삭감되었으며, 다른 임금구간대의 임금도 삭감되었다.

한편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시간당 임금)이 서로 반비례한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공단의 장시간 노동, 최소 생계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저임금 때문이라는 것이 통계적으로도 확인된 것이다. 이는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당 임금을 올리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리고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고질적인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글은 다음 다섯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 저임금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노사간 교섭, 둘째 법정최저임금 준수와 함께 법정최저임금의 현실화, 셋째 근기법 준수를 위한 지역협약, 넷째, 노조할 권리의 확대와 함께 노조활동 보장, 다섯째, 노동자의 입장에서 공단정책의 재정립 등. <끝>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환경실태

2011~2013

박준도 | 노동자의미래 정책기획팀장

1. 서론 – 공단 50년

1) 제조업 수출산업단지에서 IT·생산자서비스업이 주도하는 디지털단지로

2014년 9월 14일이면 구로지역 일대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지 50년이 되는 해다.¹⁾ 서울디지털산업단지(舊 구로공단)는 애초 외자유치를 통한 수출산업단지 육성이 목표였다. 하지만 곧 대기업 유치 전략으로 목표를 조정하고 이를 통해 의류·봉제산업 및 전자산업에서 상당한 수출실적을 내는 수출산업단지로서 면모를 갖춰간다.(이상철, 2012)

1985~1987년 3저 호황에 이은 대규모 무역흑자로 축적된 막대한 자본이 부동산 투자에 집중되고, 또 국내 통화량 팽창에 따라 자산가격마저 상승하자, 구로공단에도 토지 이용 고도화를 위한 재개발 압력이 작용한다.(양기호, 1998) 이런 압력은 1990년대 지대를 2.5배(1991년 평당 100만원 → 1999년 평당 250만원)나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구로공단에서도 생산라인 전체를 폐쇄하고 입주업종을 임대부동산업으로 전환하여 임차업체수가 크게 증가한다 (93년 86개사 → 99년 214개사) (김인중, 2007)

게다가 1985년부터, 억제된 임금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사업주들이 노동자에게 임금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유경순, 2001), 대기업들은 해외로의 공장 이전을 모색함(자본 이동)과 동시에 외주하청화를 통해 자신의 손실을 중소하청업체에 떠넘기는 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노동력 시장도 20대 젊은 여성노동력 시장이 아니라 보

1) 구로공단 조성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 1964년 9월 14일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이 제정되고, 그에 따라 구로지역 일대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다. 1965년 1월 28일 구로공단 조성을 공고하고, 1965년 3월 12일 기공식을 하며 1단지 착공에 들어갔으며 1967년 4월 1일 준공을 한다. 2단지는 1968년 6월 30일 준공을 하며, 3단지는 1973년 11월 24일 준공을 한다. (김인중, 2007; 이상철, 2012)

다 저임금인 40대 기혼여성노동력 시장으로 이동을 모색한다. (정성훈, 1994; 오은주, 1996)

기업규모도 줄어들고, 노동자 고용규모도 줄어드는 사이, IMF 외환위기를 맞이하면서 구로공단은 중규모 이상의 기업도산과 함께 공단 계도화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까지 맞이하게 된다. 1997년 입안된 ‘구로단지 첨단화 계획’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기도 했다. (구양미, 2002)

하지만 1997년 ‘구로단지 첨단화 계획’은 과거 국가주도형 산업단지 개발과는 매우 다른 결과를 야기하였는데, 민간사업자의 아파트형 공장 건립을 허용·확대하면서 여기에 조응하는 형태로 ‘공단의 첨단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1995년 8월 민간사업자의 아파트형 공장 건립이 허용되었고(이미숙최근희, 2009), 그렇게 허용된 아파트형 공장은 수도권 입지규제 제한을 받지 않을뿐더러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김인중, 2009)

1997년에는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비제조업부문의 R&D 업종 등을 포함한 IT 관련 업종이 공단에 입주가능하게 되었고(박용규, 2007), 1999년 8월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제품의 전시 및 판매장을 ‘공장의 부대시설’ 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의류유통업이 입주할 수 있는 개연성이 제공된 것이다.(한인수, 2008)

아파트형 공장 건설에 대한 지원주체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전되었다. 서울시는 아파트형 공장 건설시 저리의 자금융자(200억 or 건설비 75%)를 지원해 주었고, 나아가 아파트형 건설을 위한 최초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등록세를 면제받도록 하였고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도 50%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김인중, 2009)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규제완화 및 지원정책 덕에 아파트형공장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기술집약적인 중소기업이 들어섰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비제조서비스업이 들어서면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변화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한다.(구양미, 2012) 그 결과 공단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크게 줄고, IT정보통신, 과학기술, 사업서비스 등 생산자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다.

사실 제조업의 절대적 양은 제자리이거나 IMF 직후와 비교하면 다소나마 늘기까지도 했다.(손정순, 2012; 구양미, 2012) 하지만 규제완화 이후 밀려들어온 비제조업은 업체 수로 보나 고용된 노동자의 규모에서나 훨씬 더 컸다. 제조업 노동자가 1997년 1.5만 명에서 3.4만 명으로 2배가 된 사이 비제조업 노동자는 2001년 0.1만 명에서 2011년 8.8만 명으로 66배가 증가하였다.(구양미, 2012)

이런 변화를 반영하기라도 하듯 2000년 12월 14일 구로공단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개명되었고, 2004년 4월 23일, 지하철 역명도 구로공단역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으로

바뀌었다.(김인중, 2007)

업종의 변화만큼이나 사업장규모도 크게 바뀌었는데, 1980년대 평균 300명이 넘는 고용규모가 1990년대까지 평균 200명을 유지하다가 1999년부터는 평균 50인 이하의 소기업 중심으로 재편된다. 특히 2003년 이후로는 업체당 평균고용자수가 20인 이하로 감소한다.(구양미, 2012) 아파트형 공장이 유치할 수 있는 제조업은 사실 소음, 진동 등의 문제로 간단한 기계만을 갖춘 영세사업장만이 제조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데다(김철식, 2012), 분양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형 공장 건설업주들은 분양면적을 소형화해 소규모 기업 유치를 선호했다.(김인중, 2009)

민간 주도의 아파트형 공장이 업종고도화를 이끈 만큼, 분양가 역시 크게 증가한다. 2002~2008년간 연평균 분양가 증가율이 9.4%에 달할 만큼 크게 오른 것이다.(김인중, 2009) 2003년 60개사에 불과한 임대사업자들이 2007년에는 901개사로, 2008년에는 무려 1,410개로 늘어난다. (김인중, 2009; 김철식, 2012) 더구나 그 성격도 전부 임대사업자가 일부임대사업자보다 5.13배 많아, 생산기여도가 낮은 전부임대사업자가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임대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기도 하다.(김철식, 2012) 아파트형 공장이 산업생산의 공간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시세차익이나 준공 이후 임대수익을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징후까지 보이고 있다.(김철식, 2012)

2) 저임금 일자리로 하향평준화한 공단

이렇게 산업공단으로서 본연의 기능이 상실된 사이, 비산업자본, 건설자본, 임대자본의 투기적 수익추구공간으로 변질되는 사이, 생산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상업과 소비의 공간으로 변모해가는 사이(김철식, 2012)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활상, 노동시장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2011년 노동자의미래가 진행한 노동환경실태조사에 따르면²⁾, 첨단화된 공단의 절반이 비정규직이고(51.9%), 평균 임금은 188.1만원으로 2011년 3월 경찰부가조사에서 나타난 전체 평균임금 202.6만원보다 낮았다. 평균적으로 주 47.2시간을 근무했으며, 5명 중 1명은 52시간 넘도록 장시간 일했다(21.2%). 2011년 법정 최저임금인 4,320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18.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려한 불빛이라는 수식어를 동반하는 외형의 변화와 달리 여전히 저임금-장시간 노동이 만연해 있는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새로운 노동시장을 주도했을 정보통신산업, 사업지원서비스산업 등 생산자서비스업에서조차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일반적으로 발견된다는 사실이다. 생산자

2) 이하 정리된 결과는, 2012년 당시 발표한 결과와 수치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1%~2%) 2013년 노동환경실태조사는 조금 더 엄격한 기준 아래 보정을 했고, 같은 기준 위에서 동일한 비교를 위해 다시 분석을 했기 때문이다.

서비스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52.9%로 제조업 비정규직 비율인 48.6%보다 오히려 높다. 첨단화된 산업의 진입에 따라 생산직·미숙련직이 상향평준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직·사무직이 하향평준화되는, 남성의 노동력이 여성의 노동력처럼 저평가되어가기 시작하는 ‘노동의 여성화’ 양상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노동자의미래, 2012재판)

2012년 구로근로자복지센터가 진행한 구로구 근로자복지요구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 조사는 1단계에 한정되어 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상쇄할 만큼 기업별 수준의 복지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산업분야라고 사내복지기금이 더 많은 것도 아니고, 조성률도 15.5%에 불과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학자금이나 주택자금 지원제도는 물론, 출산·육아 휴직시 필요한 임금보존방안도 거의 없다. 심지어는 식비마저도 53.4%만이 받을 뿐이다.(박준도, 2012)

3) 공단 50년, 노동자 50년?

2014년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설립된 지 50년이 되는 해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공단이면서, 동시에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만큼 커다랗게 변모한 공단이기도 하다. 비제조업의 대거 진입으로, 입주 사업체의 업종도 계속 바뀌고 있다. 공단 변화의 속도는 여전히 빠르며 앞으로도 이런 양상은 지속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모범사례로 부추겨지면서’ 다른 공단으로까지 확대될 것이지만, 여기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려는 정책적 대안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2013년 10월 14일부터 11월 1일까지 노동자의미래는 2011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2011년 당시의 설문조사와 비교 분석을 통해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어디로 가려하는지, 공단 노동자들은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제는 기늠을 잡아보려 한 것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공단 50년에 즈음하여, 다시 한 번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창의와 혁신의 공간으로 새롭게 재창조하여 한국형 실리콘 벨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아래 서울단지를 ‘혁신과 아이디어, 기업가 정신이 넘치는 신산업 창업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며 서울단지 변화의 목표를 공식화했다. 서울단지가 수출산업단지에서 국내 최대 벤처기업 집적지로의 전환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입지적 비교우위환경이 형성된 만큼, 교통·주차시설 확충, 문화복지시설 확충 등을 통해 창조적 기업생태계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다.(한국산업단지공단, 2014)

불행히도 창조적 기업생태계에, 가치생산의 주역이자, 수출역군이라 칭송받던 노동자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구조고도화 이후 노동자들이 어떻게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는지, 노동자들의 임금실태와 노동조건은 어떠한 지, 이를 고려한 흔적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경청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3,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노동자의미래 설문조사는 「공단 50년」 우리가 무엇을 성찰해야 하고, 무엇을 고려해 공단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경종을 울려줄 것이다. 공단 50년이면 노동자도 50년이다. 노동자의 삶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공단정책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2. 구로·금천 노동실태 및 2014 임금인상요구안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자의 노동환경실태 확인
- 첨단화된 공단, 신흥 노동시장의 형성과 변모 추정 (2011년 노동환경실태조사와 비교)
- 2014년 임금인상요구액과 최저임금인상 요구액 파악

2) 조사 방법

① 조사주관 및 조사방법

○ 조사 주관

- 서울남부지역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노동자의미래

○ 조사 방법

- 출퇴근 거리 무작위 설문조사, 조사원 면접조사
- 방문 설문조사

② 조사명칭

- 2013년 구로·금천 노동실태 및 2014임금인상요구안 조사 (이하 2013노동환경실태조사)
- ※ 2011년 노동환경실태조사 (이하 2011노동환경실태조사)

③ 조사기간 및 시간

○ 조사기간

- 출퇴근 거리 설문조사 : 10.14 ~ 11.1 (총 11일)
- 방문 설문조사 : 11.1 ~ 11.30 (총 8일)

○ 조사시간

- 설문지 배포 및 홍보 (출근시간) 오전 7시~8시 30분 or 7시 30분 ~ 9시
- 설문지 작성 및 설문지 회수 (퇴근시간)
-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

④ 조사지역

○ 출퇴근 거리설문조사

- 1공단 : 서울관악지청 앞 (10.22~23), 코오롱 싸이언스밸리 앞 (10.23), 남구로성당 앞 (10.22), 외환은행 (11.1)
- 2공단 : 가산디지털단지 4번 출구 앞 (10.14~15)
- 3공단 : 가산디지털단지 5번 출구 앞 (10.16~17, 10.25), 가산디지털단지 6번 출구 앞 (10.17, 10.31), 가산디지털단지 7번 출구 앞 (10.31), 한진택배사거리 (10.16, 10.30), 독산역 2번 출구 앞 (10.14~15, 10.29)
- 공단외곽 : 독산역 1번 출구 앞 (10.15)

○ 방문 설문조사

- 2공단 : 씨엔비텍 분회
- 3공단 : 메디칼사푸라이 지회, 물가협회 지회
- 공단외곽 : 공무직 금천, 세일엠텍 분회, 학비 분회, 홈플러스 금천, 홈플러스 시흥

⑤ 면접원

- 출퇴근 거리설문조사 : 11일 동안 연인원 138명, 장소 당 평균 7.3명
- 방문 설문조사 : 8일 동안 연인원 16명, 장소 당 평균 2명

⑥ 조사항목

- 인구학적 특성 : 성, 연령, 국적, 학력, 가족구성
- 노동시장 특성 : 업종/중분류, 직종, 종사상지위, 고용형태
- 노동조건 특성 : 임금, 근로시간, 임금체계, 생활가능여부
- 임금, 최저임금요구 : 2014년 임금요구, 2014년 최저임금 만족도, 2015년 법정최저임금 희망액

3) 조사결과

① 응답자 : 2,809명

· 출퇴근 거리설문조사 : 2,518명

· 방문 설문조사 : 291명

② 장소별 응답자 분포

공단	장소	분포(명)	비율(%)
1공단 904명 (32.3%)	서울관악지청	325	11.6
	코오롱 사이언스밸리	212	7.6
	남구로성당	141	5.0
	외환은행 앞	226	8.1
2공단 249명 (8.9%)	가산디지털단지역 4번	146	5.2
	씨엔비텍	103	3.7
3공단 1,486명 (53.2%)	가산디지털단지역 5번	375	13.4
	가산디지털단지역 6번	366	13.0
	가산디지털단지역 7번	127	4.5
	한진택배사거리	205	7.3
	독산역 2번 출구	318	11.3
	메디칼사푸라이	65	2.3
	물가협회	30	1.1
공단외곽 138명 (4.9%)	독산역 1번	45	1.6
	세일엠텍	37	1.3
	공무직 금천	23	0.8
	학비	7	0.3
	홈플러스 금천	14	0.5
	홈플러스 시흥	12	0.4
기타 32명 (1.1%)	기타	32	1.1
합계		2518	100.0

<표 1-1> 2013년 노동환경실태조사 응답자 분포

공단	장소	분포(명)	비율(%)
1공단 925명 (30.15%)	코오롱 싸이언스밸리	167	5.4
	구로이마트(서울관악지청)	510	16.6
	남구로성당	110	3.6
	에이스테크(외환은행 앞)	138	4.5
2공단 385명 (12.6%)	가산디지털단지 3번	43	1.4
	가산디지털단지 4번	342	11.2
3공단 (51.7%)	가산디지털단지 5번	534	17.4
	가산디지털단지 6번	326	10.6
	독산역 2번	315	10.3
	한진택배사거리	410	13.4
공단외곽 173명 (5.7%)	독산역 1번	173	5.7
합계		3,070	100.0

<표 1-2> 2011년 노동환경실태조사 응답자 분포

③ 조사 특징

공단외곽지역을 제외한 장소만을 대상으로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2-1>과 같다.

		2013 노동환경		2013.10 산업동향 서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업종	음식료	11	0.4	1,140	0.7
	섬유·의복	82	3.2	7,004	4.3
	목재·종이·출판	26	1.0	3,638	2.2
	석유화학	43	1.7	2,175	1.3
	비금속소재	1	0.0	171	0.1
	철강	4	0.2	231	0.1
	기계	70	2.7	4,568	2.8
	전기·전자	499	19.2	31,279	19.2
	운송장비	27	1.0	723	0.4
	기타제조	38	1.5	1,545	0.9
	비제조	1796	69.2	110,618	67.8
성별	여성	1415	53.7	41,670	25.5
	남성	1221	46.3	121,422	74.5
	전체	2639	100.0	163,092	100.0

<표 2-1> 응답자의 업종별 성별 분포 (2013)

비슷한 시기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업동향」에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업종 비율을 살펴보면 「노동환경실태조사」와 비슷한 분포 양상을 띠고 있다. 비제조업이 유사한 비율로 가장 많고, 전기전자업종이 다음, 섬유·의복 업종이 세 번째로 많은 분포를 하고 있다.

아래 <표2-2>는 노동자의미래가 2011년에 진행한 노동환경실태조사(이하 2011 노동환경실태조사)와 역시 비슷한 시기 「산업동향」의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업종 비율을 비교하고 있다. 역시 비슷한 분포 양상을 띠고 있다.

		2011 노동환경		2011.5 산업동향_서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업종	음식료	9	0.4	376	0.3
	섬유·의복	144	5.6	8,334	6.1
	목재·종이·출판	52	2.0	4,476	3.3
	석유화학	65	2.5	2,417	1.8
	비금속소재	3	0.1	91	0.1
	철강	2	0.1	216	0.2
	기계	122	4.8	6,153	4.5
	전기·전자	526	20.5	27,534	20.3
	운송장비	25	1.0	912	0.7
	기타제조	30	1.2	1,418	1.0
	비제조	1589	61.9	83,968	61.8
성별	여성	1549	55.0	38752	28.5
	남성	1269	45.0	97143	71.5
	전체	2895	100.0	135,895	100.0

<표 2-2> 응답자의 업종별 성별 분포 (2011)

하지만 성별 분포는 두 해 년도 모두 크게 다른데, 2011년과 2013년 「노동환경실태조사」에서 여성의 비율은 각각 55.0%와 53.7%인데 반해 비슷한 시기 「산업동향」의 여성 비율은 28.5% 25.5%로 나타난 것이다. 참고로 양쪽 모두 여성의 비율이 줄어드는 추세다.

업종 분포는 비슷한데, 성비가 크게 다른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 길거리 무작위 설문조사는 특성상 노동환경실태조사는 설문응답자의 응답선호도, 조사자의 접근 편이성, 유동인구대비 조사자 비율, 퇴근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선호도 등 몇 가지 간섭요인이 있다.

둘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임시·일용직 비율이 과소평가된다. 사실 이 요인이 성비에서 차이를 보이는 가장 커다란 이유로 보이는데, 사업주 입장에서 임시·일용직을 일일이 적는 것도 번거로운데다 제조업의 경우 파견은 불법이기 때문에 사업주들이나 총무과장 등은 설문에 응답할 때 실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임시·일용직을 그대로 적지 않는다. 더구나 인력공급업체와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마저 다르기 때문에 행정구역이나 권역별로 사업체 조사를 할 경우 임시·일용직과 파견 노동자의 비율은 더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아래 <표3>은 2009년 당시 전국사업체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임시·일용직 비율의 차이다. 주지하는 것처럼 전국사업체 조사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대표적인 설문조사다. 임시·일용직 비중이 매우 적게 추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9 전국사업체조사 (천명, %)		2009 경제활동인구조사(천명, %)	
상용직	10,250	82.2	9,390	57.1
임사·일용직	2,214	17.8	7,064	42.9

<표 3> 전국사업체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임사·일용직 비율 비교 (2009)

2009년 당시 구로3동, 가산동, 독산1동의 사업체조사에서 남녀 간 성비를 살펴보면 남성이 67.5%이고 여성이 32.5%로 나타났다(노동자의미래, 2013). 사업체 조사에서는 임사·일용직 비율이 낮은 것을 반영하듯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여성노동자의 비율도 매우 적게 나타난다. 참고로 2009년 경찰부가조사에서 임사·일용직 여성의 비율은 55%로 여성이 다수다.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산업동향」도 임사·일용직 비중이 과소평가될 것이기에 여성노동자 비율이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반대로 「노동환경실태조사」는 무작위 거리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임사·일용직 비중이 과소평가되지는 않는다. 더구나 (제한적인 범위로 해석해야 하지만) 「노동환경실태조사」에서 여성의 비율은 「산업동향」과 비슷하게 줄어들고 있기도 하다. 「노동환경실태조사」의 여성 노동자의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노동환경실태조사」가 임사·일용직 노동자 비중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음을 반증한다.

용어정리 및 데이터 보정

1) 가족 형태

① 가족형태 1 : 가족을 부양하는 주체에 따른 구별.

구분	기준
독신	결혼을 안 한 거라기보다는 혼자 사는 경우를 가리킴.
동반자	동반자(부부 및 동거인)하고만 사는 사람
동반 부양	동반자이외에 함께 사는 가족이 있는 사람, 맞벌이 부부를 의미하지는 않음.
1인 부양	동반자 없이 함께 사는 가족이 있는 사람
기존 가족	동반자 없고 자식도 없는데, 가족과 함께 사는 40살 미만,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② 가족형태 2 : 부양대상에 따른 구별

3) 이렇게 시간당 임금을 추정하면, 월평균임금을 주당평소근로시간*30.4/7로 나누는 것보다는 정확함. 다만 이 계산도 한계가 있는데, 첫째, 이 계산법도 노동자의 실제 시급보다는 높게 추정됨. 왜냐하면 월평균임금에는 각종 수당 및 고정상여, 보너스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 따라서 이렇게 계산된 시간당 임금은 기본급보다는 고정급(혹은 통상임

구분	기준
독신	부양대상 없음
동반자	부양대상 없음
양육	자식만 있는 경우
봉양	부모만 있는 경우. 엄밀하게 말하면 봉양이라기보다는 부모하고만 같이 사는 경우임.
양육봉양	자식·부모 모두 있는 경우

2) 시간당 임금과 구간

① 시간당 임금

- 장시간 노동이 관행인 곳에서는 임금 추이와 임금 분포를 살펴보려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서 따지는 것이 바람직.
- 공단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에 최대한 가깝게 추정해보기 위해, 주1회 유급휴가, 연장근로 0.5배 가산수당 등을 포함해 계산.³⁾

- 수식은 아래와 같음

i.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text{시간당임금} = \frac{\frac{\text{월평균임금} \times 12\text{개월}}{365\text{일}} \times 7\text{일}}{\text{주40시간} + \text{유급휴무8시간} + (\text{주당노동시간} - 40\text{시간}) \times 1.5}$$

ii. 주 15시간 이상 40시간미만 일하는 경우

$$\text{시간당임금} = \frac{\frac{\text{월평균임금} \times 12\text{개월}}{365\text{일}} \times 7\text{일}}{\text{주당노동시간} + 8\text{시간} \times \frac{\text{주당노동시간}}{40\text{시간}}}$$

iii. 주 15시간이 미만 일하는 경우

$$\text{시간당임금} = \frac{\frac{\text{월평균임금} \times 12\text{개월}}{365\text{일}} \times 7\text{일}}{\text{주당노동시간}}$$

② 시간당 임금 구간

· 2013.8 경제활동부가조사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시간당 임금을 추정한 뒤, 시간당 임금의 중위값을 찾으면 8,097원임. 중위값의 2/3인 5,398원 미만은 저임금 노동자⁴⁾. 중위값의 3/2인 12,146원 이상은 중상위 이상, 10분위인 19,178원 이상이면 상위 10% 노동자를 가리킴.

· 이를 정리하면

범주	구간
최저임금 미만	$Y < 4,860$
저임금 미만	$4,860 \leq Y < 5,398.3$
중하위 미만	$5,398.3 \leq Y < 8,097.45)$
중간평균 (평균값 포함)	$8,097.4 \leq Y < 12,146.1$ (평균값 10,153.3)
중상위 이상	$12,146.1 \leq Y < 19,178.1$
10분위 (상위 10%) 이상	$19,178.1 \leq Y$

3) 임금관련 용어

- 임금 : (상여금, 성과금을 포함한) 월평균 임금
- 시간당임금 : 유급휴일, 연장근로 0.5배 가산수당을 고려한 시간당임금
- 고정급 :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고정 수당, 고정 상여금이 포함됨. 이 조사에서는 성과금을 포함하여 추산함.

$$\text{고정급} = \text{시간당임금} \times (\text{주40시간} + \text{유급휴무8시간}) \times \frac{365\text{일}}{7\text{일} \times 12\text{개월}}$$

- 변동급 : 매월 변동되는 임금, 연장근로수당, 성과금, 인센티브 등이 포함됨.
- 희망임금 : (상여금, 성과금을 포함한) 월평균 희망임금
- 희망시간당임금 : 희망임금을 현재 근로시간을 전제한 임금이라 간주, 유급휴일, 연장근로 0.5배 가산수당을 고려한 시간당임금
- 희망고정급 : 임금인상 희망액을 시간당 임금 희망액으로 환산, 여기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다시 곱한 금액.
- 임금 인상필요액 : 희망임금 - 임금

- 고정급 인상필요액 : 희망고정급 - 고정급
- 최저임금 인상필요액 : 희망최저임금 - 최저임금

4) 노동시간 구간

구분	기준
단시간 근로	주 40시간 미만
주당 40시간	주 40시간
주당 48~52시간	주 40시간, 하루 평균 2시간 잔업
주당 53~59	주 40시간, 하루 평균 2시간 잔업, 토요일 특근
주당 60~	주 40시간, 하루 2~3시간 잔업, 주말 특근, 연장 등

5) 업종 분류

① 서비스업을 세분화한 분류

분류	설명	중분류 코드
제조업 (출판업 포함)	제조업, 출판업 포함 (과거 데이터와 비교를 위해)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581)
생산자서비스업	기업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업. (금융보험,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 폐기물수집-환경복원, 전문과학기술, 컴퓨터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 등)	64, 65, 66, 68, 69, 74, 75, 38, 39, 70, 71, 72, 73, 62, 63, (582)
유통서비스업	기업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업. (도소매업, 운수업, 통신업)	45, 46, 47, 49, 50, 51, 52, 61
개인서비스업	개인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가구내자가소비, 서비스, 기타서비스, 하수폐수분뇨처리, 예술여가서비스)	55, 56, 59, 60, 97, 98, 95, 96, 37, 90, 91
사회서비스업	개인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보건, 사회복지, 국제외국기관)	84, 85, 86, 87, 99, 94
기타	나머지	

② 제조업을 세분화한 분류

금)을 시급으로 환산한 것에 가까움.

둘째, 가산수당 계산도 야간근로나 유급휴일근로의 경우 0.5배 가산을 더해야 함. 하지만 이것도 불가능. 따라서 연장근로 가산 밖에 못하기 때문에 실제 시간당 임금보다도 역시 실제 시급보다는 높게 추정될 수밖에 없음.

4) OECD는 중위임금의 2/3미만을 저임금 노동자로 규정한다. 2013년에 발표된 <OECD Employment Outlook>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25.1%로 미국(25.1%)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OECD 기준에서 고임금 노동자는 중위임금의 3/2 이상인 노동자다. 하지만 고임금이 라는 어감에 비해 실제 포괄범위가 넓고 중위임금과 평균임금 격차가 상당한 상황에서 중위임금의 3/2는

분류	설명	중분류 코드
음식료	음식료, 담배	10, 11, 12
섬유·의복	섬유, 의복, 가죽, 신발	13, 14, 15
목재·종이·출판	목재, 종이, 인쇄	16, 17, 18
석유화학	연탄, 화학물질, 의약품, 플라스틱	19, 20, 21, 22
비금속소재	비금속광물	23
철강	1차 금속	24
기계	금속가공제품, 기타기계	25, 29
전기·전자	전자영상통신, 의료·정밀·광학, 전기장비	26, 27, 28
운송장비	자동차, 기타 운송·조선 등	30, 31
기타제조	가구, 기타	32, 33
비제조	제조업이 아닌 나머지	

4) DATA 보정

① 업종분류

- 사업체, 주요생산품, 하는 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소분류까지 분류.

② 직종

- 하는 일, 주요생산품, 본인이 작성한 직종 선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류.

③ 임금

- ID 7295와 7296은 임금이 시급 4,860을 씀. 소정근로시간으로 월급 환산.
- 임금이 1,200을 초과하면 연봉으로 간주, 12로 나누어 월급 환산

④ 희망임금

- 시급을 쓴 경우 : ID 1649(6,500)와 ID 7202(5,500)는 소정근로시간 곱해서 월급 환산
- 1,200을 초과하면 희망연봉으로 간주, 12개월로 나누어 월급 환산
- 전일제 노동자 중, 희망임금이 자신의 임금보다 적는데 최저임금 101만원보다도 적으면 임금인상요구액을 쓴 것. 따라서 이 금액을 자신의 임금이 더해 희망임금으로 다시 환산.

⑤ 희망최저임금

- 최저월급을 최저시급으로. 단, 최저시급과 최저월급을 동시에 쓴 경우 제외
- 최저시급만 쓴 경우 최저시급으로

⑥ 종사상 지위

- 계약기간을 작성한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임시직, 일용직, 상용직 보정

⑦ 기간제

- 계약기간을 명시한 경우 계약기간에 근거하여 기간제로 보정

⑧ 임금인상항목

- 원래는 단일 항목을 고르는 것이었으나 복수응답이 적지 않았음. 이에 따라 복수응답을 전제로 분석을 함.

5) DATA 제외

① 임금

- 임금인상요구액이 500만 원 이상
- 고정급 인상요구액이 -100만 원 미만
- 최저임금 500만 원 이상, 60만 원 이하

② 노동시간

- 주당 15시간 미만 제외. (이상 값이 너무 많고, 구별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 주당 85시간 이상 제외. (일주일 내내 하루 12시간 이상을 3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일하는 경우인데, 사실상 비현실적이라 간주하고 제외)

③ 정기상여금

- 100% 미만인 경우,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경우임. 다양한 수당을 적은 경우로 간주, '정기상여금을 안 받는다'로 보정함.

④ 근로계약기간 보정

- 계약기간이 13년이 넘는 경우는 계약종료시점(예. 2014년 5월)을 적은 경우임. 근로 계약기간을 알 수 없으므로 제외.

평균값을 조금 넘길 뿐이기에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 구간은 평균값을 기준으로 중하위 미만 구간과 대비되기에 중상위로 재정의한다. 여기서 고임금 노동자는 상위 10%이상을 가리킨다. 상위 10%는 시급 19,000원 이상 받는 임금노동자로 기본급만 4백만 원 정도를 받는 노동자를 가리킨다.

5) 2013.8 경황 부가조사에서 본 조사의 시간당 임금을 적용해 계산한 중위값

3. 인구학적 특징과 변화

1) 성별, 세대별, 학력별 특성

		2011		2013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성	여성	1649	55.2	1539	54.9
	남성	1339	44.8	1266	45.1
세대	~20대	993	32.5	981	35.5
	30대	974	31.9	910	32.9
	40대	712	23.3	562	20.3
	50대	281	9.2	262	9.5
	60대~	92	3.0	51	1.8
학력	초등교육	29	1.0	39	1.5
	중등교육	85	2.9	93	3.5
	고등교육	1250	42.1	716	27.2
	대학교이상	1607	54.1	1789	67.8

<표 4> 노동환경실태조사 인구학적 특성

2011년이나 2013년이나 여성응답자가 높게 나타났다. 세대별로도 20~30대가 2013년에도 각각 35.5%, 32.9%를 차지할 만큼 젊은 취업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과 비교했을 때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변화는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취업자 층이 54.1% → 67.8%로 많이 늘었다는 점이다.

	2011		2013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대	38.0	25.8	39.9	30.2
30대	24.3	41.8	26.9	40.2
40대	25.6	20.4	21.0	19.5
50대	10.0	7.9	11.3	7.2
60대~	2.1	4.3	1.0	2.9
총합	1637	1336	1515	1248

<표 5> 성별 세대비 변화

<표 5>성별 세대비를 보면 여성은 40대가 4.6%포인트 줄어들었다. 남성의 경우는 40대 이상이 조금씩 줄면서 20대가 4.4%포인트 늘어났다.

2) 가족형태 변화

		2011		2013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가구수	독신	330	10.8	1295	48.4
	2인 가구	506	16.6	455	17.0
	3인 가구	811	26.6	473	17.7
	4인 가구	1007	33.0	356	13.3
	5인~	395	13.0	98	3.7
부양주체 6)	독신	330	11.1	1295	48.4
	동반자	273	9.2	216	8.1
	동반 부양	966	32.5	502	18.8
	1인 부양	303	10.2	419	15.7
	기존가족	1104	37.1	245	9.2
부양대상 7)	독신	330	11.1	1295	48.4
	동반자	369	12.4	216	8.1
	양육	964	32.4	779	29.1
	봉양	1108	37.2	285	10.7
	양육·봉양	205	6.9	102	3.8

<표 6> 가족형태 변화

2011년에서 2013년 사이 가장 극적으로 변한 것이 있다면, 가족형태일 것이다. 2년 사이 기존 가족과 함께 살던 노동자들이 대거 독립해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기존 가족과 함께 사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기존가족’ 비율이 2011년 37.1% → 2013년 9.2%로 크게 준 반면, 혼자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1.1% → 48.4%로 크게 늘었다. 한편 동반부양의 비율도 32.5%에서 18.8%로 크게 줄었는데 반대로 1인부양은 10.2% → 15.7%로 늘어났다.

- 6) 부양주체-가족형태는 누가 가족을 부양하는가라는 차원에서 구별해 본 것이다. 이를 추정하기 위해 동반자하고만 있다고 선택한 사람(동반자), 동반자 뿐만 아니라 가족과도 살고 있다고 한 사람 (동반 부양), 동반자 없이 자식이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1인 부양), 마지막으로 1인 부양으로 보이지만 육아도 하지 않고, 나이도 40미만인 경우는 기존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기존 가족)이라 간주했다.
- 7) 부양대상-가족형태는 누구를 부양하는가라는 차원에서 구별해 보았다. 아이도, 부모도 없는 경우는 각각 독신과 동반자로 구별해보았고, 아이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양육으로, 부모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봉양으로, 아이·부모 둘다 있다고 응답한 경우 양육·봉양으로 보았다.

	성별				세대별			
	2011		2013		2011		2013	
	여성	남성	여성	남성	30대 이하	40대 이상	30대 이하	40대 이상
독신	9.7	13.1	52.0	44.2	13.4	7.1	64.8	12.1
동반자	9.2	9.1	7.6	8.6	9.3	8.8	8.2	7.7
동반 부양	29.8	36.0	17.7	19.9	17.5	59.8	7.3	44.0
1인 부양	12.4	6.9	14.7	16.8	2.3	24.4	6.3	36.2
기존가족	38.9	35.0	8.0	10.5	57.5	0.0	13.4	0.0

<표 7> 성별세대별 가족형태 변화

<표 7> 성별세대별 가족형태 변화를 살펴보면 이런 양상의 의미를 좀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30대 이하가 기존 가족과 함께 하던 비율이 2011년 당시에는 57.5%였는데, 2013년에는 13.4%로 급격히 줄었다. 20~30대 젊은 세대들이 지난 2년 사이 가족으로부터 독립해 각자의 삶을 꾸려나간 것이다.

한편 같은 표를 보면, 40대 이상에서 동반부양의 비율이 줄고, 반대로 1인 부양 비율이 24.4% → 36.2%로 늘어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역시 동반부양은 29.8% → 17.7%로 줄고 오히려 1인 부양이 미약하게나마 12.4%에서 14.7%로 증가했다. 반대로 남성의 1인 부양생계 비중의 상당히 크가 증가했는데, 6.9%에서 16.8%로 증가하였다.

4. 노동시장의 특성과 변화

1) 업종과 직종

제조업(출판포함)의 비율이 41.5% → 35.6%로 줄고 있고, 반대로 생산자서비스업과 유통서비스업이 각각 35.8% → 36.9%, 9.7% → 11.8%로 늘어나고 있다. 전기전자업종과 섬유복합업종도 21.5% → 19.0%, 5.8%→3.2%로 조금씩 줄고 있다. ‘첨단화’과정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2011		2013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업종 (서비스업 세분류)	제조업(출판포함)	1134	41.5	985	35.6
	생산자서비스업	978	35.8	1022	36.9
	유통서비스업	266	9.7	327	11.8
	개인서비스업	180	6.6	158	5.7
	사회서비스업	119	4.4	194	7.0
	기타	53	1.9	81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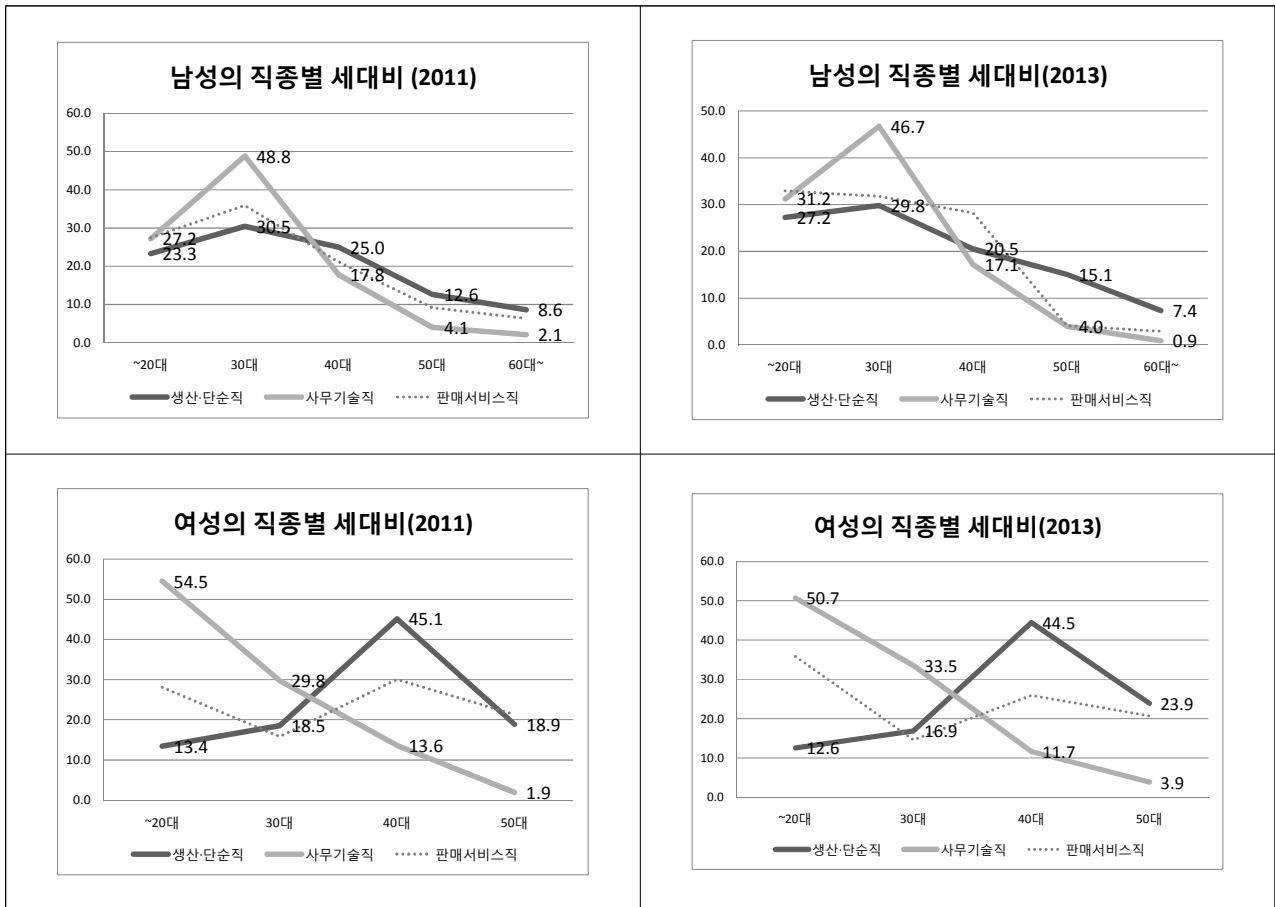
		2011		2013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업종 (제조업 세분류)	음식료	10	0.4	11	0.4
	섬유·의복	158	5.8	88	3.2
	목재·종이·출판	59	2.2	28	1.0
	석유화학	75	2.8	44	1.6
	비금속소재	3	0.1	2	0.1
	철강	3	0.1	4	0.1
	기계	138	5.1	73	2.6
	전기·전자	588	21.5	526	19.0
	운송장비	26	1.0	62	2.2
	기타제조	31	1.1	40	1.5
	비제조	1639	60.0	1889	68.3

<표 8> 공단의 업종변화

	2011		2013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기술직	753	24.6	762	27.5
사무직	989	32.4	957	34.6
서비스직	120	3.9	99	3.6
판매직	290	9.5	291	10.5
숙련직	153	5.0	131	4.7
반숙련직	118	3.9	74	2.7
단순직	603	19.7	448	16.2
관리직	30	1.0	6	0.2

<표 9> 공단의 직종 변화

직종별로 보면 기술직과 사무직이 24.6% → 27.5%, 32.4% → 34.6%로 늘어나고 있고, 반숙련직과 단순직은 3.9% → 2.7%, 19.7% → 16.2%로 줄어들고 있다. 직종의 변화 추이에서도 공단의 ‘첨단화’ 과정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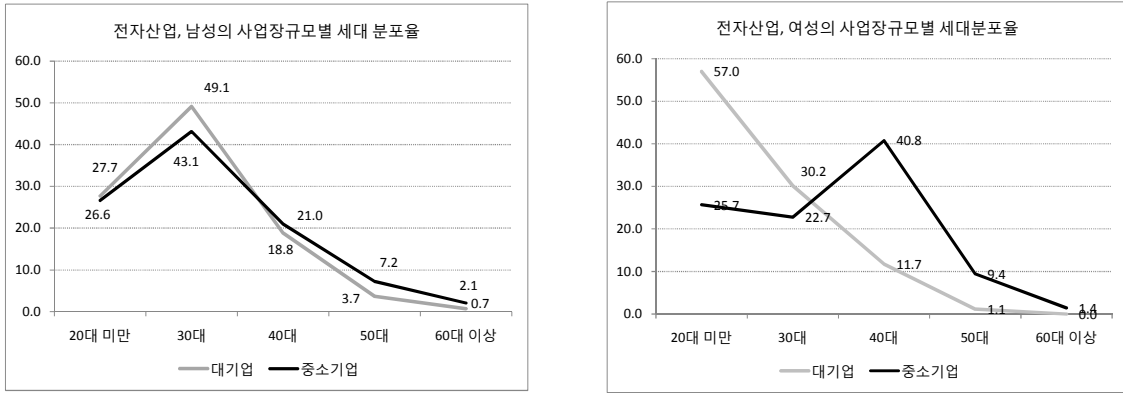
<그림 1> 남성과 여성의 직종별 세대비

<그림 1>은 남성과 여성의 직종별 세대비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남성의 직종별 세대비를 보면 특이사항 없이 30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여성의 직종별 세대비는 사무기술직과 생산·단순직이 전혀 다르다. 사무기술직은 20대와 30대가 높은 반면, 생산·단순직은 40대가 많은 것이다.

『구로공단의 오늘을 말한다』(박준도, 2012)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직종별 세대 분화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전자산업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 규모대비 세대별 노동시장 교차현상과 사무직·생산직에서 종종보이는 세대별 교차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림 2> 전자산업에서 남성과 여성의 사업장 규모별 비율을 보면 남성은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데, 여성은 세대별로 젊은 세대는 대기업에 40대 이후 세대는 중소기업에 분포되어 있다. 대공장 같은 경우 농공단지에서 있다할지라도 젊은 노동력을 구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 반대로 20대 여성은 가족과 떨어져 일자리를 구할 수 있지만 40대 여성은 그럴 수 없다. 40대 여성노동자들은 경력단절을 겪은 데다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 저임금을 감내하고 거주지 근처에서 일자리를 구한다. 중소기업들은 대표적인 저임금 여성노동력 시장인 기혼여성을 활용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비싼 지대를 감수하고 도심 주변에 남아 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생산직 노동시장의 대부

분을 40대 여성이 차지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에서다.



<그림 2> 전자산업에서 남성과 여성의 사업장규모별 세대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산업 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2009

2) 종사상 지위와 비정규직

		2011		2013		2013.8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백분율
지위	상용직	2430	82.7	2239	83.4	64.9
	임시직	405	13.8	380	14.2	26.7
	일용직	102	3.5	66	2.5	8.4
고용형태	정규직	1411	48.1	1461	54.5	54.1
	비정규직 ⁸⁾	1523	51.9	1222	45.6	45.9
	임시근로	1378	47.6	1094	42.0	44.3
	장기임시	262	9.0	183	7.0	25.1
	한시근로	1116	38.8	911	35.1	19.2
	(기간제)	633	21.8	569	21.8	15.1
	시간제	374	12.8	273	10.2	10.3
파견용역	384	13.3	260	9.8	4.6	

<표 10> 고용형태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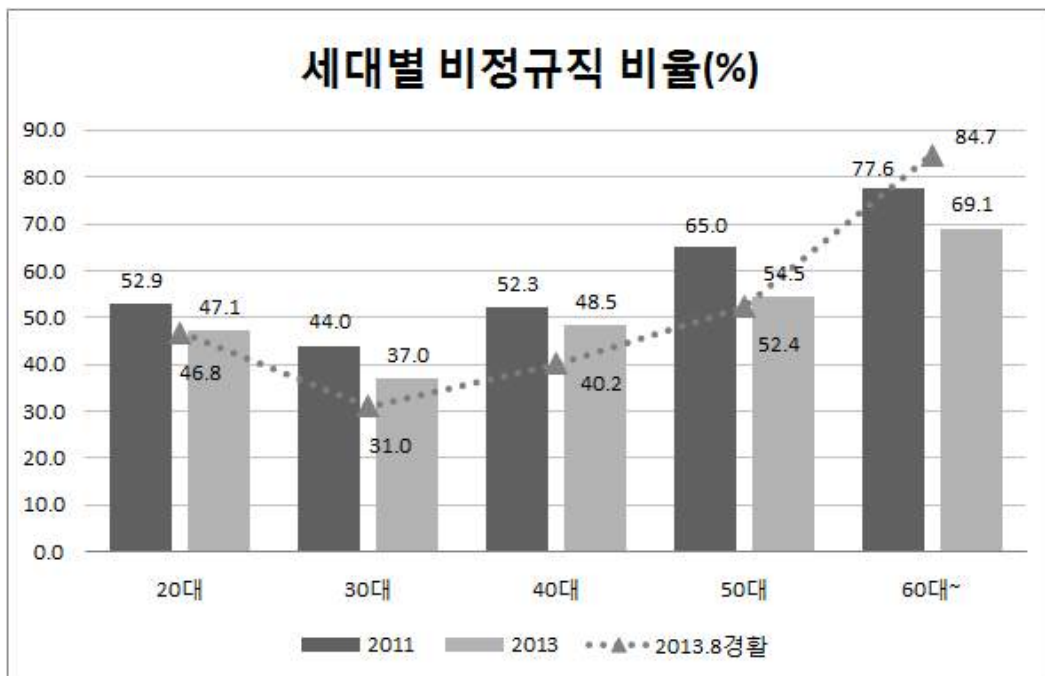
분포(%)	2011			2013			2013.8경황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비정규직	34.6	13.8	3.5	28.9	14.2	2.5	10.8	26.7	8.4
정규직	48.1	0.0	0.0	54.5	0.0	0.0	54.1	0.0	0.0

<표 11> 종사자지위와 고용형태

8) 2011.3 경황 부가조사 비정규직 규모에 대한 추정치는 한노사연의 추계방식을 따랐다. 한노사연의 비정규직 추계방식은 노동부의 한시직, 시간제, 비전형적 노동자 뿐만 아니라 임시·일용직 노동자 전체를 포함한다. 장기임시직을 한노사연은 비정규직으로 간주하는 반면 정부는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셈이다.

2011년에 비해 미약하게나마 상용직 비중이 상승하였고, 2013.8 경찰부가조사와 비교하면 상용직 비중이 높은 편이다. 정규직 비중도 48.1% → 54.5%로 상승하였고, 그만큼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서울디산의 비정규직은 장기임시근로의 분포율이 매우 낮고, 한시근로 분포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즉 암묵적으로 고용이 승계될 수도 있는 임시·일용직 노동자 비율은 낮지만—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정규직이라 본다—고용이 승계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거나, 정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계약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고용이 불안한 노동자가 많다. 또 <표 11>에서 보는 것처럼 상용직 비정규직 비율은 전국에 비해 2.5배 이상으로 높다. 사실 상용직이란 임시·간헐적으로 쓰는 노동력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용직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비정규직 활용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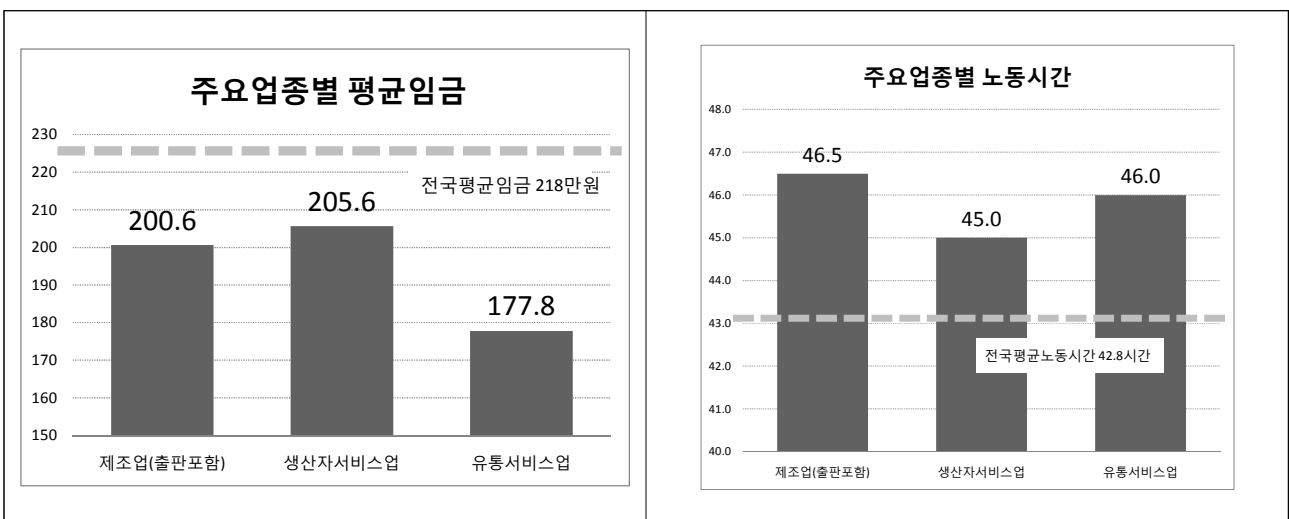
<그림 3> 세대별 비정규직 비율

한 가지 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세대별 비정규직 비율이다.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20대와 30대, 특히 40대의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높다. 2,30대가 새로운 노동시장을 대표한다고 했을 때, 이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는 것은 공단 노동자의 어두운 앞날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5. 노동조건 특징과 변화

1) 임금과 노동시간, 시간당 임금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평균노동시간은 주당 45.6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임금은 196.5만원이다. <그림 4>에서 보는 것처럼 공단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 세 업종 모두가 전국평균 218만원(2013년 8월 경제활동부가조사)에 미달한다. 반대로 노동시간은 세 업종 모두가 전국평균 42.8시간을 훌쩍 넘는다. 장시간 일하고도 임금을 적게 받는 곳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다.



<그림4> 주요업종별 평균노동시간과 평균임금

공단의 임금분포를 살펴보자. 장시간 노동이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는 곳에서, 임금 추이와 임금 분포도를 살펴보려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서 따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단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에 최대한 가깝게 추정해보기 위해, 주1회 유급휴가, 연장근로 시 0.5배 가산수당 등을 포함해 계산해 보았다.(자세한 설명은 <용어정리 및 데이터 보정> 참조)

이렇게 추정된 시간당 임금을 가장 가까운 시기에 조사된 경제활동부가조사상의 시간당 임금에서 중위 값을 찾아 저임금 (중위값의 2/3), 중위값, 중상위(중위값의 5/3), 10 분위(상위 10%) 범위를 확정하면 <표 13>과 같은 임금구간을 얻는다.

	2011	2013
최저임금 미만	4,320 미만	4,860 미만
저임금	4,794.5 미만	5,398.3 미만
중하위	7191.8 미만 (2011.3 경황 부가조사 시간당임금 중위값)	8,097.4 미만 (2013.8 경황 부가조사 시간당 임금 중위값)
중간평균 (평균값 구간 포함)	10,787.7 미만 (평균값 9,191.0)	12,146.1 미만 (평균값 10,153.3)
중상위	17,979.5 미만	19,178.1 미만
10분위 (상위 10%)	17,979.5 이상	19,178.1 이상

<표 13> 시간당 임금구간

이 구간을 가지고 2011년 2013년 노동환경실태조사를 분석하면 <표 14>와 같은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2011		2013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최임미만	493	18.6	377	15.7
저임금	161	6.1	181	7.5
중하위	882	33.3	875	36.4
중간평균	631	23.8	644	26.8
중상위	392	14.8	281	11.7
10분위	92	3.5	44	1.8

<표 14> 시간당 임금 비율 (최저임금 미만 비율)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비중이 적어도 15.7%는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1년 18.6%에 비하면 많이 개선된 것이지만 여전히 비중이 높다.⁹⁾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 받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많은 것은 실제근무시간보다 월급으로 계산 받는 근무시간이 적거나(무료노동·무급노동)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이다(체불임금). 조퇴하거나 마무리 교육한다고 30분씩 일찍 출근시키고 늦게 퇴근시키는, 불법적인 ‘무료노동’ 관행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고, 연장근로를 해도 ‘연봉제·포괄임금’ 명목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이 허다하다.

2011년에서 2013년으로 변화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상위 10%는 중상위로, 중상위 노동자들은 중간평균으로, 중간평균 노동자들은 중하위로 한 단계씩 하향 평준화되고

9) 그나마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율이 줄어든 것은, 임금인상의 결과라기보다는 민주노총 등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외에 존재하는 노동사회단체들이 최저임금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사회적 캠페인을 지속해왔기 때문이다. 근거법을 지키게 했을 뿐이다. 실제로 이번 설문조사에서 노동자들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손꼽았으며 동시에 지속되어야 한다고 손꼽은 캠페인은 최저임금 인상캠페인이었다. 57%가 이 캠페인을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있다는 사실이다. 10분위 노동자 비율이 3.5%→1.8%로 줄었고, 중상위는 14.8%→11.7%, 10분위 노동자와 중상위 노동자가 하락했다면 그만큼 늘어야 하는데, 중간평균임금 노동자 비율은 그에 못 미치는 28.6%에 그쳐 여기서도 일부가 중하위로 떨어졌다. 그렇게 해서 중하위권-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또 이렇게 임금구간을 설정하고 난 뒤 또 주목해야 할 것이 서울디지털단지 노동자 대다수가 전체 노동자의 중위임금보다 적게 받으며 일하고 있다는 점이고, 평균임금 구간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이보다 적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상위 10%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은 3.5%에서 1.8%로 이마저도 반 토막 났다. 첨단산업단지라고 하지만 그 이름에 걸맞은 중상위 이상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2013년 기준 10%가 조금 넘을 뿐이고, 정작 노동자 대다수는 중위임금보다 적게 받는다.

	성별		고용형태	
	1.여성	2.남성	1.비정규직	2.정규직
최임미만	17.8	13.1	24.0	9.0
저임금	9.2	5.6	11.0	4.7
중하위	44.0	27.0	36.2	36.6
중간평균	24.0	30.3	19.5	32.7
중상위	4.5	20.5	8.1	14.6
10분위	0.5	3.5	1.2	2.3

<표 15-1>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분포비

<표 15-1> 성별 임금분포를 보면 여성의 최저임금 미만비율(17.8%)이 남성(13.1%)보다 더 높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거의 대다수 여성노동자(44.0%)가 중위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받고 있다면 남성(35.3%)은 중간임금대의 임금을 받는 편이라는 점이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비정규직은 거의 4명 중 한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의 주요 업종들을 임금구간별로 살펴보면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생산자서비스업이 기존 제조업과 임금구간이 거의 일치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직종			2013.8 경황
		생산·단순	사무기술	판매서비스	
최임미만	15.7	33.9	8.0	21.3	20.6
저임금	7.5	10.6	6.3	8.6	5.3
중하위	36.4	35.2	36.9	35.2	24.1
중간평균	26.8	15.5	32.4	19.9	23.1
중상위	11.7	4.7	13.9	13.6	18.1
10분위	1.8	0.2	2.5	1.3	8.9

<표 15-2> 직종별 임금분포비

최임미만 구간만 놓고 보면 경찰 전체와 비교했을 때 비율은 낮다. 하지만 이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특성이 조금 반영된 탓인데, 다른 산업단지와 다르게, 사무기술직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단의 일반적 특징인 생산·단순직만 보면 최임미만 노동자는 33.9%에 이른다. 최저임금 노동자는 1시간만 무료-무급노동을 해도 최저임금 위반이다. 33.9%라는 수치는 최저임금만 받고 일하는 노동자 비율이 얼마나 많은지, 무료-무급노동이 얼마나 일상화되어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수치인 셈이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낮지만, 반대로 중상위는 물론 10분위 노동자 비율도 낮다는 사실이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자들은 중하위 수준의 임금을 버는 노동자가 가장 많은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연도별로 제조업과 생산자서비스업의 임금구간비율을 비교해보자.

	2011 노동환경			2013 노동환경		
	제조업 (출판포함)	생산자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제조업 (출판포함)	생산자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최임미만	23.5	11.6	23.8	20.1	9.7	19.1
저임금	7.8	4.7	6.5	6.6	8.9	8.7
중하위	31.1	35.3	30.7	32.8	35.9	42.2
중간평균	20.3	27.3	25.5	26.3	29.7	21.7
중상위	14.3	17.0	11.3	11.9	13.8	8.3
10분위	3.0	4.2	2.2	2.3	2.0	0.0

<표 15-3> 업종별 임금분포비

<표 15-3>에서 제조업과 생산자서비스업의 임금구간은 제조업의 최저임금미만 구간만 제외하면 거의 비슷하다. 지난 2년 사이 생산자서비스업의 중상위 임금계층의 비중이 줄고 (54.5%), 중간·평균 계층, 중하위 계층이 늘어나면서 제조업의 임금구성분포와 점점 비슷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새롭게 조성되는 노동시장이 제조업의 과거 저임금 노동력시장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 <표16> 세대별 시간당 임금 분포를 보면 임금이 노동자 생애주기도 전혀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0대의 임금보다 40대의 임금이 더 낮고, 50대 임금은 더 낮아진다.

세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시간당임금	6389.2	8935.9	8344.8	7411.4	5137.1

<표 16> 세대별 시간당 임금수준

2) 임금과 생활 수준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받고 있는 임금으로 생활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절반이상이 불가능하다고 대답하고 있다. 세대별로 보면 이런 경향은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빈도	백분율
추가소득이 필요하다	1465	55.2
그럭저럭 가능하다	1003	37.8
여유가 있다. 저축도 할 수 있다.	188	7.08

<표 17-1> 임금과 생활수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추가소득이 필요하다	39.3	52.8	75.9	79.1	73.8
그럭저럭 가능하다	49.2	40.8	21.2	18.7	26.2
여유가 있다. 저축도 할 수 있다.	11.4	6.5	2.9	2.2	0

<표 17-2> 세대별 임금과 생활수준

	독신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추가소득이 필요하다	39.84	62.93	66.22	79.39	79.78
그럭저럭 가능하다	49.92	32.72	29.73	17.88	17.98
여유가 있다. 저축도 할 수 있다.	10.24	4.35	4.05	2.73	2.25

<표 17-3> 가족수별 임금과 생활수준

<표 17-3>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가족 수가 늘어나도 추가소득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다. 연령이 높아지면 가계 구성원도 늘고, 그 만큼 많은 생활비가 요구되지만 정작 임금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3)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

저임금에 추가소득이 필요할수록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피할 방법이 없게 된다. 유일하게 소득을 만회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과견업체 말이 한 달에 180만원 벌 수 있는 직장이라고 했어요. 매일 2~3시간 잔업에 토요일 근무하고 하면 벌 수 있다고요. 자기 아니면 이런 직장 소개해 주는 곳도 없다고...” (서울디지털산업단지 K 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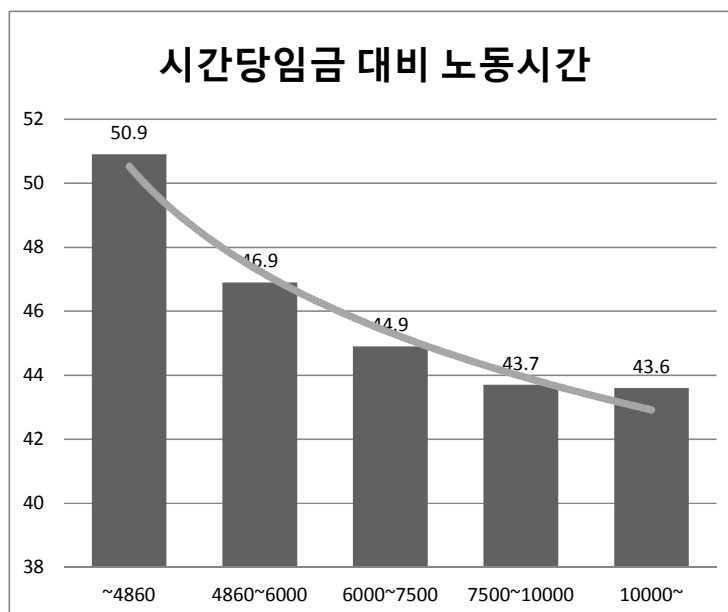
“그 언니는 한 달에 200은 벌어야 한다고 했어요. 빚 갚고 하려면... 그래서 매일 잔업해요. 남들 다 퇴근해도 불 켜놓고 일하고... 일요일에도 나와서 일하고... 몸이 어떻게 견디나 싶어요.” (P 노동자)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생산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최저시급을 받는다. 시급 4,860원에 180만원을 벌려면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해야 한다. 60시간을 일해야 163만원 정도를 번다. 여기서 정기상여금이나 식대, 교통비 등 수당을 더 주는 곳이라야 180을 간신히 번다. 200만원을 벌려면 일요일에도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하는 수밖에 없다.

	빈도	백분율	저임금	보통
0~39시간	110	4.4	6.1	3.9
40시간	1094	43.3	25.8	48.0
41~47시간	443	17.5	14.0	19.0
48~52시간	483	19.1	19.0	19.0
53~59시간	133	5.3	10.8	3.8
60~시간	265	10.5	24.4	6.4

<표18>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

<표 18>을 보면 서울남부는 40시간 노동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3.3%로 적지 않은 비중이다. 하지만 저임금 노동자 (최저임금 미만 포함)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25.8% 만이 그렇게 일할 뿐 68.1%의 노동자는 그보다 더 장시간 일을 한다. 심지어 24.4%는 60시간을 초과해 일을 하기도 한다. 그렇게 해야 부족한 임금소득을 만회하기 때문이다.



<그림 5> 시간당임금 대비 노동시간

<그림 5> 시간당임금과 노동시간이 서로 반비례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즉 시간당 임금이 낮아지면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을 훌쩍 넘는다. 시간당임금이 10000원에 가까워 질수록 노동시간은 줄어든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노동을 현실화하려면 시간당 임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부터 강구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시간당 임금이 낮은 노동자는 결국 장시간 노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6. 2011년, 2013년 실질임금 추이

		2011 (물가지수 104)		2013 (물가지수 107.67)		실질임금인상률
		임금	실질임금	임금	실질임금	
	전체	188.1	180.9	196.5	182.5	0.9
성	여성	152.4	146.5	164.1	152.4	4.0
	남성	233.8	224.8	236.5	219.7	-2.3
세대	~20대	156	150.0	163.2	151.6	1.0
	30대	219.8	211.3	225.4	209.3	-0.9
	40대	202.1	194.3	218.2	202.7	4.3
	50대	179.2	172.3	192.1	178.4	3.5

<표 19-1> 2011년, 2013년 실질임금인상률 (성별, 세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실질임금 인상률은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1>을 보면 명목임금을 각각 실질임금으로 환산해 인상률을 계산해 보면 2년여 간 실질임금이 0.9%밖에 안 오른 것이다. 여성은 4.0% 정도 올랐지만 남성은 -2.3% 삭감되었다. 세대별로 보면 30대가 임금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4.0% 인상된 것도 2012년 3.7%, 2013년 2.0% 경제성장한 것에 비추어보면 임금이 올랐다고 이야기 할 수도 없는 비율이다.

		2011 (물가지수 104)		2013 (물가지수 107.67)		실질임금인상률
		임금	실질임금	임금	실질임금	
업종	제조업(출판포함)	184	176.9	200.6	186.3	5.3
	생산자서비스업	198.5	190.9	205.6	191.0	0.0
	유통서비스업	180.8	173.8	177.8	165.1	-5.0
	개인서비스업	146	140.4	151.4	140.6	0.2
	사회서비스업	185.1	178.0	179.9	167.1	-6.1

<표 19-2> 2011년, 2013년 실질임금인상률 (업종)

주요업종별로 보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제조업 정도만이 5.3% 정도 올랐다고 나타나는데 이것도 사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조금 반영되었을 뿐 전체적으로는 제자리다.

		2011 (물가지수 104)		2013 (물가지수 107.67)		실질임금상승률
		임금	실질임금	임금	실질임금	
직종	기술직	244.2	234.8	240.1	223.0	-5.0
	사무직	193.2	185.8	192.7	179.0	-3.7
	서비스직	124.7	119.9	131.1	121.8	1.5
	판매직	185.3	178.2	197.5	183.4	3.0
	숙련직	198.6	191.0	213.8	198.6	4.0
	반숙련직	164.5	158.2	180.9	168.0	6.2
	단순직	116.8	112.3	137.9	128.1	14.0
	관리직	378.6	364.0	533.3	495.3	36.1

<표 19-3> 2011년, 2013년 실질임금인상률 (직종)

시간당임금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기술직과 사무직의 임금삭감이 눈에 두드러진다. 단순직의 경우 임금이 상대적으로 올랐는데, 이것은 최저임금 인상요인에 의한 결과다. <표 19-4>를 보자.

		2011 (물가지수 104)		2013 (물가지수 107.67)		실질임금인상률
		임금	실질임금	임금	실질임금	
임금 구간	0~4860	105.9	101.8	114.6	106.4	4.5
	4860~6000	142.2	136.7	139.3	129.4	-5.4
	6000~7500	172.5	165.9	163.2	151.6	-8.6
	7500~10000	212.3	204.1	203.8	189.3	-7.3
	10000~	332.2	319.4	324.4	301.3	-5.7

<표 19-4> 2011년, 2013년 실질임금인상률 (임금구간)

시간당임금의 구간별로 살펴보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만 4.5% 정도 올랐을 뿐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임금인상도 법정최저임금의 인상률이 반영되었을 뿐이다. (2011년 4320원 → 2013년 4860원) 이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자의 임금이 법정최저임금에 근접하는, 하향평준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5.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자의 임금인상 요구

	OBS	노동시간	임금	희망임금	시간당임금 인상필요액	고정급	희망고정 급	고정급 인상필요액
	전체	45.6	196.5	256.1	2484.2	172.1	225.2	51.8
저 임 급	저임금	49.8	120.4	174	2095.3	92.8	136.6	43.7
	보통	44.4	221.1	281.7	2601.2	196.1	250.3	54.3
임 급 구 간	최저임금미만	50.9	114.6	170.3	2158.2	86.0	131.0	45.0
	저임금	47.6	132.6	181.6	1966.3	107.1	148.1	41.0
	중위임금미만	45.3	159.6	213.3	2233.8	137	183.6	46.6
	중간	43.9	237.1	298.9	2650.2	210.9	266.3	55.3
	중상위	43	360.4	444.8	3747.5	328.9	407.3	78.2
	10분위	41.1	521.1	601.2	3714.4	501.0	579.7	77.5
성 별	여성	44.1	164.1	213.7	2143.3	149.3	194.7	44.7
	남성	47.4	236.5	308.5	2905.0	200.3	262.9	60.6

<표 20>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자의 임금인상희망액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자의 임금인상요구액을 집계하면 <표 20>과 같다. 기본급, 정기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51.8만원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금액은 이러저러한 요구들을 단순 평균 냈을 때의 금액이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요구액은 훨씬 더 절실하다. 이들은 평균 49.8시간동안 장시간 노동을 하며 한 달 120여만 원을 겨우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고정급을 기준으로 136.6만원을 희망하고 있다. 사실 이 금액은 매우 적은 금액인데 법정최저생계비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2013년 법원이 산정한 최저생계비를 보면 아래와 같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법정최저생계비	858,252	1,461,347	1,890,473	2,319,599	2,748,723	3,177,849

<표 21> 정준영(2013), 「가계부채 문제와 개인회생·파산제도의 합리적 운용방안」, 『가계부채와 개인회생·파산제도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심포지엄』, 법원행정처

법정최저생계비란 아무리 빚에 쪼들리고 차압당할 위기에 내몰려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려면 이만큼의 금액은 변제해 주어야 하는 최소 기준을 말한다. 그런데 이 136.6만원은 2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하지만 공단노동자들은 적어도 이만큼이라도 고정적으로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10

시간씩 연장근로를 해도 현재 임금으로는 살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도 41.0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고정급 희망금액은 148.1만원이다. 공단노동자들의 평균가구원 수는 2.1명인데, 딱 그만큼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줄 수 있는 임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희망최저시급	희망최저임금	최저시급 인상필요액	최저임금 인상필요액
	전체	6964.9	145.3	1754.9	36.6
저임금	저임금	7044.3	146.9	1834.3	38.3
	보통	6882.8	143.6	1672.8	34.9
임금 구간	최저임금미만	7005.2	146.1	1795.2	37.4
	저임금	7126.2	148.6	1916.2	40
	중위임금미만	6793	141.7	1583	33
	중간	6800.5	141.8	1590.5	33.2
	중상위	7541.1	157.3	2331.1	48.6
	10분위	6974.1	145.5	1764.1	36.8
성별	여성	6785.3	141.5	1575.3	32.9
	남성	7183.8	149.8	1973.8	41.2

<표 21>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자의 2015년 법정최저임금 희망액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자의 희망최저임금도 2인 가구 기준의 법정최저생계비를 가리고 있다. 146만원 어딘가를 다양한 방식으로 가리고 있는 것이다.

6. 소결 - 노동자 50년

1) 저임금 구조가 안착하고 있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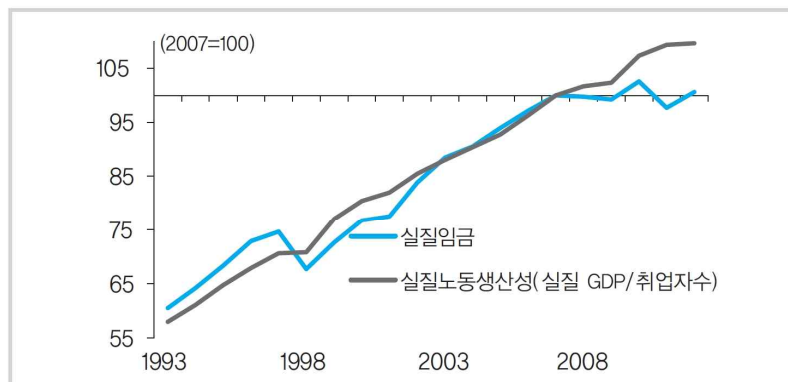
첨단화된 공단이라 하지만 지난 2년여 동안 노동자들의 삶이 어떻게 나아졌는지 명시적으로 드러난 증거는 없다. 대규모로 진행된 2011년 설문조사와 2013년 설문조사 결과는 생산자서비스업 노동자든, 기존 제조업 노동자든 모두 비슷한 임금구간대에서 저임금 노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알려줄 뿐이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비율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저임금과 중위임금 노동자비율이 늘었을 뿐이다. 상위 10%, 중상위 이상, 평균임금 지대의 노동자 비율이 줄었다. 한 단계

씩 임금이 하락한 것이다. 최첨단 시설로 갖춰진 공간에서 창조적 노동을 한다고 하지만 임금실태를 보면 기존 제조업 공단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의문이 들 뿐이다.

2) 2년간 실질임금 0.9% 인상, 사실상 정체된 임금

실질임금 0.9%인상은 지난 2년 동안 고작 임금이 1~2만원의 임금이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무직과 기술직은 임금이 삭감되었으며 명시적으로 임금이 올라간 집단은 법정최저임금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계층이다. 이들 층만이 겨우 법정최저임금만큼은 자신의 임금을 올렸을 뿐이다. 다른 직군의 노동자는 삭감되고 법정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임금만 올랐다는 것은 임금이 점차 하향평준화하고 있음을 알려줄 뿐이다. 한국사회에서 6년간 실질임금이 동결되었다는 금융연구원의 보고(박종규, 2013)가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자료 : 고용노동부, 한국은행

<그림 6> 박종규, 「임금없는 성장과 근로소득 분위별 실질임금 추이 및 시사점」, 『주간 금융브리핑』, 23권 2호 p8에서 재인용

3) 공단의 장시간 노동, 최소 생계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저임금 때문

주40시간 기본적으로 받는 임금으로 기초적인 생계도 할 수 없으면 공단노동자들은 장시간 일을 선택한다. 그래야 가계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24.4%가 60시간을 넘게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당 임금과 장시간 노동은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라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장시간 노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저임금 구조를 혁파하고, 노동자가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임금을 받을 때에만 가능하다.

4) 대안

① 저임금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노사간 교섭

지난 2년 여간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정체되었다. 일주일에 10시간씩 잔업을 더해 돈을 벌어도 한 달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을 만큼 공단노동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졌다.

수년간 억제된 임금에 비하면 지금 공단노동자들이 희망하는 임금요구안 40여만 원은 결코 높은 금액이 아니다. 임금억제책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라도 저임금 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실제로 이번 요구안 조사에서 노동자들이 가장 희망하는 회사는 임금을 올려주는 회사다.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조대표자들과 함께 임금인상방안을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요구를 경청할 수 있는 소통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다.

② 법정최저임금 준수, 법정최저임금 현실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3.2%다. 그런데 이들 저임금 노동자 중 67.7%가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다.

법정최저임금 위반율이 이렇게 높으면 법정최저임금을 올려놓은 도로 제자리가 되고 만다. 최저임금만 제대로 해결해도 저임금 노동자의 고충을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행정력으로 단속하며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 또 법정최저임금을 제대로 지키게 하기 위한 노력을, 노동조합과 경영자협의회는 물론, 관악지청, 지자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임금을 대폭 올릴 수 있는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법정최저임금을 올리려는 국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임금이 너무 오랫동안 정체되어왔다는 인식에 근거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책임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경제를 살리고, 장시간 근로를 줄일 수 있는 국가의 책임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나아가 지역차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생활임금 정립을 위한 지자체와 지역 사회 주체들의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자체에서의 생활임금 제도 도입, 제조업 노임단가까지의 확대적용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③ 근기법 준수를 향한 지역협약의 확대

법정최저임금 위반율이 높고, 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 중 하나는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계산해주지 않은 채, 그 임금을 떼먹기 때문이다. 주 1회 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기초적인 근기법을 지키려는 노력이 없으면 법정최저임금제도도 허사다. 근기법을 지키기 위한 지역사회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2013년 5월 민주노총남부지구협과 서울관악지청, 그리고 서울디지털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구로구청, 금천구청 등은 근로기준법을 지키겠다는 공동의 선언을 한 바 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적지 않은 노동자들(15.7%)이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설문조사 응답자 중 근기법준수신고센터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노동자들도 81.1%나 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민주노총 남부지구협이 근기법 준수캠페인을 꾸준히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 주체들은 공단노동자들의 소박한 희망사항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근기법 준수를 위한 실무협의회 자리를 안착화하는 것은 공단변화에 소중한 초석을 놓는 것이 될 것이다.

④ ‘노조할 권리’의 확대, 노조활동 보장

노동자 모두가 임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첫째,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의 보장을 통한 집단적인 임금인상, 즉 노동조합 결성과 임금을 올리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가능하다. 둘째, 국민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활수준개선을 위해 국가가 임금정책 복지정책을 전향적으로 조치를 취할 때 가능하다.

노동자 개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방식의 임금 인상은 소수 개개인의 임금은 올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수준에서 보면 제자리에 멈추거나, 심지어는 하락하는 경향마저 나타나기도 한다. 연봉 협상과정에서 종종 드러나듯, 제한된 임금 몫을 가지고 노동자들이 내부에서 경쟁하게하기 때문이다. 노동자 전체가 자신의 임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통한 단결 필요하다. 헌법에 노동3권과 최저임금-생존권 보장을 명시한 것은 이런 저간의 사정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장시간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에는 무엇보다 노동조합 조직율이 낮은 것에서 기인한다. (박준도, 2012; 손정순, 2013) 노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에 기초한 부당노동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이다.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서울관악지청,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⑤ 공단정책, 노동자의 입장에서 다시 수립되어야

이제까지 공단 정책이라는 것은 사업체 유치를 위한 각종 자금 지원, 법인세취득세 면제 혜택, 기업 지원 시설 제공 등 사용자들에게만 집중되어 왔다. 그나마 이마저도 비산업자본, 건설자본, 임대자본에게 집중되어 왔다. 이런 관행을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무엇보다도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부터 모색해야 한다. 그러려면 민간사업자에게 공단의 구조고도화 계획을 맡겨서는 곤란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민간주도 아파트형 공장개발이 주도하는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는 생산의 공간으로서의 산업단지 위상을 무너뜨리고, 상업과 소비, 금리생활자들에 대한 이익 퍼주기 공간으로 변질시키고 말았다.

산업단지 발전방향에 대한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한국사회가 제조업 공단을 어떻게 유지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모아가면서 정부가 책임있는 대안과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도 공단정책을 펴는 데 있어 기업입주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지켜야 할 최소 의무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 일정 기간 기업 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것을 전제하는 법인세취득세 혜택, 근기법 준수 의무를 전제하는 기업 지원 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모두가 공단에서 함께 사는 주체라는 점을 감안한 공단정책을 세워야 한다.

참고문헌

-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 각연도
통계청, 경제활동 부가조사, 각연도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동향, 각연도
- 구양미 (2002), 「구로공단(서울디지털산업단지) 산업구조재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 구양미 (2012),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진화와 역동성:클러스터 생애주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 18권 제3호
- 김동배 외(2006),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사용 확대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김인중 (2007), 「서울 디지털산업단지의 역사와 미래」, 『영남지역발전연구』 36
- 김인중 (2009) 「아파트형공장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10(1)
- 김유선 (2006), 「서비스 산업 노동시장 분석」, 『동향과 전망』, 통권 68호
- 김철식 (2012), 「서울디지털 산업단지의 재구조화 : 산업생산의 공간에서 소비 및 지대 수익의 공간으로」, 『사회와역사』 제 95집
- 남기범 (2013), 「구로공단 앞으로 50년」 『구로공단 지난 50년과 앞으로 50년에 관한 성찰』, 금천구청
- 노동자의미래 (2011:2012재판) 『구로공단의 오늘을 말한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실태조사』, 민주노총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단병호 의원실 (2005), 「서울디지털산업단지(구. 구로공단)의 구인형태를 통해서 본 비정규직 실태와 문제점 : 구직자의 눈으로 바라 본 일자리의 현실」, 『2005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문미성 (1993), 「제조업의 지역 특수적 재편과정」, 한국공간환경연구회 편, 『서울 연구 : 유연적 산업화와 새로운 도시·사회·정치』, 한울.
- 박종규, 「임금없는 성장과 근로소득 분위별 실질임금 추이 및 시사점」, 『주간 금융브리피』, 23권 2호
- 박준도 (2012), 『구로구 근로자 복지요구도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구로근로자복지센터
- 박준도 (2013), 「공단조직화를 위한 모색, 새로운 가능성」, 『진보평론』 52호
- 박용규 외 (2007), 「구로공단 부활의 의미」, 삼성경제연구소.
-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2010), 「2010 간접고용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민주

노총

- 성재민 (2014), 「저임금근로자의 실태」, 『노동리뷰』, 2014.3
- 손정순 (2010), 「다층적 하청구조가 파견노동자의 임금고용에 미치는 영향: 전자업종 내 중소사업장 파견노동을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제 16권 제 1호
- 손정순 (2012),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역의 산업구조 분기와 주변부 서비스업의 확산」, 『디지털 시대의 구로공단』, 한국학술정보(주)
- 손정순 (2013), 「구로공단 지역 노사관계의 형성·전개와 노동시장 성격의 동질성」, 『디지털 시대의 노동자들』, 한국학술정보(주)
- 양기호 (1998), 「문제의 제기 : 한국의 산업화와 구로공단」, 『산업구조 전환과 구로공단의 재구조화』, 성공회대학교 한국사회문화연구소
- 염두열 (2005), 「아파트형 공장의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
- 이미숙최근희 (2009), 「도시지역 공장재개발수단으로서 아파트형공장에 관한 연구:서울 디지털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2(2)
- 이상철 (2012), 「구로공단의 형성과 변모: 1968~1987」, 『디지털 시대의 구로공단』, 한국학술정보(주)
- 오은주 (1996), 「구로구 지방 노동시장 변화과정 연구: 의류산업의 노동활용전략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경순 (2001), 「1984년 ‘구로지역 민주노조운동’의 전개와 특징」 『역사연구』 9호
- 정준영 (2013), 「가계부채 문제와 개인회생·파산제도의 합리적 운용방안」, 『가계부채와 개인회생·파산제도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심포지엄』, 법원행정처
- 이유미 (2011), 「전자산업 여성노동자 실태와 요구」, 노동자운동연구소
- 정성훈 (1994), 「구로공단의 산업 재편 과정」, 한국공간환경연구회 편, 『서울 연구 : 유연적 산업화와 새로운 도시·사회·정치』, 한울
- 정순구 (2013), 「첨단산업 클러스터로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성장요인 및 한계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제26집 제3호
- 정흥준 외(2012), 『공단실태조사 결과발표 워크숍 자료집』, 민주노총
- 한국산업단지공단 (2000),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추진 계획』
- 한국산업단지공단 (2014), 「서울단지, 창의혁신의 공간으로 탈바꿈 계기 마련 : “창의혁신포럼” 본격 가동」, 보도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센터 (2009), 『산업단지 공장용지의 합리적 관리방안』
- 한인수(2008),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효율적 발전방안: 금천구의 디지털2단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지원 외 (2011), 『서울 디지털산업단지 제조업 기업들의 특징』, 민주노총 남부전략조직사업단 내부 워크숍 자료』

홍진기 (2009),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산업경제분석』, 2009.2



당신이 원하는 임금은 얼마인가요? 구로·금천 노동실태 및 2014 임금인상 요구안 조사

전셋값도, 세금도, 공공요금도, 물가도 오르는데 노동자의 임금만 안 오릅니다.
임금이 올랐으면 하지만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쉽게 반영이 되질 않습니다.
서울 남부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의 미래' 와 민주노총이 함께
구로·금천 지역 노동실태 및 2014 임금인상 요구안 조사를 진행합니다.

임금인상. 내가 받고 싶은 임금은 얼마인지 한 번 얘기해 봅시다.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를 반영하여
2014년 임금인상 요구안과 2015년 최저임금 인상요구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구로·금천 노동자의 요구를 모아봅시다.

[노동실태 및 임금인상 요구안 조사에 동참해 주세요!]



출·퇴근길
(설문지 받기)



설문지 작성
"5분"



설문지 제출
선물증정

[설문지 작성, 이곳에서 합니다. 선물을 받으세요]

- 10월 14일(월) 독산역 2번출구, 가산디지털단지 4번출구
- 10월 15일(화) 독산역 1번출구, 가산디지털단지 4번출구
- 10월 16일(수) 한진택배사거리, 가산디지털단지 5번출구
- 10월 17일(목) 가산디지털단지 5번출구 / 6번출구
- 10월 22일(화) 구로 이마트 맞은편, 남구로역 2번출구(구로3동 성당앞)
- 10월 23일(수) 구로 이마트 맞은편, 구로디지털단지 3번출구 인근

17:00 ~
21:00

본 설문지는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제 ①, ②항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설문내용은 연구 목적 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이용되지 않습니다. 본 조사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서명 : _____

※ 설문문항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귀하의 의견을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항을 빠짐없이 선택,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A. 기본 문항

- 성 별 ① 남성 ② 여성
- 출생년도 19____년
- 출생국가 ① 대한민국 ② 기타 : _____
- 학교교육 ① 중졸 미만 ② 중졸
③ 고졸 ④ 전문대 이상
- 혼인상태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이혼
- 부양가족(복수선택) ① 없다 ② 배우자·동거인
③ 자식 ____명 ④ (조)부모 ____명

B. 업종, 직종

- 사업체명 : _____
- 주요 생산품(서비스) : _____
- 종업원 수 : _____명
- 주로 하는 일 : _____
- 하는 일이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① 미숙련직-단순조립, 검사·포장, 배달·운수, 청소·경비 등
 ② 반숙련직-기계작동, 건설보조공
 ③ 숙련직-전기·통신기술 수리공, 철근·목공,
 ④ 판매직-영업판매, 소매상, 도매상, 계산원, 영업·판매
 ⑤ 서비스직-간호·간병, 음식점종업원, 미용사, 택배배달 등
 ⑥ 사무직-인사·회계·총무, 사무 정리 등
 ⑦ 기술직-의사·교사, 회계사, 박사, 프로그래머 등
 ⑧ 농림어업직-농림·어업
 ⑨ 고위관리직-이사장 급, 공무원 과장 급 이상

C. 지위

1. 직장에서 지위는 무엇입니까

임금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① 상용직 (계약기간 1년 이상)	④ 고용주
② 임시직 (1개월 ~ 1년 미만)	⑤ 자영업자
③ 일용직 (1개월 미만)	⑥ 무급 가족 종사자

※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 계약기간을 모르는 분들은, 퇴직금을 받기로 했으면 상용직, 그렇지 않으면 임시직으로 체크해주세요.

2.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셨습니까?

- 정하지 않았음 (정년이 있으면 '정하지 않았음'입니다.)
- 정했음 : _____년, _____개월, _____일

D. 고용형태

- 회사가 폐업·고용조정을 하지 않으면, 계속 다닐 수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귀하의 근무형태는?

- 전일제 ② 시간제·파트타임

3. 임금을 직장에서 받으니까? 파견, 용역업체에서 받으니까?

- 근무 중 사업체
- 파견, 용역업체 (업체명 : _____)

4. 개인적으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만큼) 소득을 얻습니까?

- ※ 보험설계, 학습지, 킷, 화물운송, 골프장 보조원 등 특수고용
- 예 ② 아니오

E. 노동조건 및 생활조건

1. 주당 평균 근로시간 : (주당) _____ 시간

2. 임금을 어떻게 계산 받으십니까?

- 시급제 ② 일당제 ③ 월급제 ④ 연봉제 ⑤ 건당

3. 정기 상여금을 받고 있습니까?

- 그렇다. _____ % ② 아니다.

4. 월 평균 임금 : (매월) _____ 만원

※ 상여금·성과금 포함한 월 평균 임금소득. 연봉의 1/12

5. 본인의 임금만 가지고 생활이 가능한가요?

- 그렇지 않다. 추가소득이 필요하다. (맞벌이, 생활지원, 대출 등)
- 그럭저럭 가능하다.
- 여유가 있다. 저축도 할 수 있다.

F. 2014년 희망임금과 최저임금

1. 2014년 임금은 얼마나 받기를 희망하십니까? (상여금·성과금 포함)

(매월) _____ 만원

2. 임금항목 중 어떤 것을 올리기를 원하십니까?

- 기본급 ② 정기상여금 _____ %
- 연장근로수당 보장 ④ 연말보너스, 성과금

3. 2014년 법정최저임금은 한 달 기본급 108.8만원(시급 5,210원)입니다. 2015년에는 얼마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월) _____ 만원

G. 서울남부 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단

지난 3년간 민주노총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노동자의 미래) 활동을 하였습니다.

1. 다음의 활동을 보거나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복수응답)

1-1. 캠페인 사업을 알고 있다.

- “무료노동 이제 그만” 캠페인
- “노동법을 지켜라” 캠페인
-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

1-2. 홍보물을 보거나 받은 적이 있다.

- 현수막
- 바지락 신문, 팸플릿

1-3.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 법률상담, 건강상담
- 노동법 준수 캠페인 이후 사장 및 관리자의 태도변화

1-4. 사업에 참여해 본 적이 있다.

- 산악회 등 동호회 활동
- 강좌(노동법 강좌, 건강권 강좌 등), <지슬> 영화상영
- 바지락 광장 (먹거리장터, 벼룩시장, 헌책판매 등)

1-5. 본 적이 없다.

2. 어떤 활동이 가장 좋았습니까? (복수응답)

- “무료노동 이제 그만” 캠페인
- “노동법을 지켜라” 캠페인
-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
- 현수막
- 바지락 신문, 팸플릿
- 법률상담, 건강상담
- 산악회 등 동호회 활동
- 강좌(노동법 강좌, 건강권 강좌 등), <지슬> 영화상영
- 바지락 광장 (먹거리장터, 벼룩시장, 헌책판매 등)

H. 내가 원하는 사업장

직장을 옮긴다면 어떤 직장으로 가고 싶습니까? 아래 보기에서 우선 순위 세 가지를 골라주세요.

- [보기]
- ①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
 - ② 고용이 안정된 직장
 - ③ 노동조합이 있는 직장
 - ④ 근무시간이 길지 않은 직장
 - ⑤ 인간적으로 대우를 해주는 직장
 - ⑥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직장
 - ⑦ 직원들 사이가 좋은 직장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3순위 : _____

I.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근로기준법 준수 선언

2013. 5. 8 민주노총 남부지구협의회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고용노동부 관악지청 등이 다음과 같이 근로기준법 준수선언을 하였습니다.

첫째,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서 미교부, 불법시간외 근로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개인과 노동단체 등이 제기하는 신고사항에 적극 대처한다.

둘째, 노동자·사용자를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제 단위들이 적극 협력한다.

셋째, 근로기준법 준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로구청과 금천구청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공동선언단위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구로구청, 금천구청,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구로구상공회의소, 금천구 상공회의소, (사)G밸리산업협회, 한국노총 서울본부 구로·금천지부,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

1. 알고 계셨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2. 회사에 근기법 준수를 요구하거나 위반사항을 신고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미교부, 불법시간외 근로 신고센터’를 이용하겠습니까?

(1) 이용하겠다.

- ① 민주노총 등 <서울남부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을 통해서 이용하겠다.
- ② 노동부 관악지청에 직접 찾아가 이용하겠다.

(2) 이용하지 않겠다.

J. 기타

- ▶ 이 조사는 전국의 노동자 밀집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합니다.
- ▶ 설문조사 결과는 참여자 모두의 것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및 2014년 임금인상 요구결과를 알고 싶으면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 ▶ 구로·금천 노동자 노동환경개선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 름 : _____

연락처 : _____

주소 : (우편물을 받고 싶은 분) _____

서울남부 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단
<노동자의 미래>에 하고픈 말

노동실태 및 임금인상 요구안 조사 이렇게 쓰입니다

2015년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요구안을 만듭니다!

2014년 6월이 되면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2015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위원 9명 중 4명이 민주노총 위원입니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하게 될 2015년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을 저임금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만들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최저임금 인상요구안이 바로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요구안이 됩니다.

2014년 최저임금은 한달 108만원입니다. 너무 낮지 않은가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정도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해 봅시다!

2014년 노동자의 임금 인상 요구안을 만듭니다!

민주노총은 매년 노동자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발표해왔습니다. 그 동안은 물가 인상률과 경제 성장률, 노동자의 평균 생계비, 노동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발표해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에 더해 노동자들이 현재 임금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이며, 어느 정도의 임금 인상을 바라고 있는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임금 인상 요구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만이 아닌, 전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 요구를 모아서 2014년 노동자 임금인상 요구안을 발표합니다.

'2015년 구로·금천 노동자 임금 인상 요구안' 을 만듭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실태조사 중 구로·금천 지역 노동자들의 요구만을 따로 모아 '2015 구로·금천 임금 인상 요구안' 을 만들 예정입니다. '구로·금천 임금인상 요구안' 을 만들어서 지역의 사용자 단체, 지자체, 노동부에 전달하고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동자의 미래' 와 '민주노총' 이 앞장서겠습니다.

다 오르는데 임금도 올립시다!

언론 보도를 보면 모든 게 오른다는 기사 뿐입니다. 전셋값은 하늘을 찌를 듯 하고, 장바구니 물가, 세금, 택시요금 등등 모두가 오른다는 얘기뿐인데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겠다는 얘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노동자와 서민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집니다.

노동자들이 이렇게 절절히 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모아낸다면 정부와 대기업도 가만히 있지는 못할 겁니다. 정부는 최저임금부터 대폭 인상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대기업은 사상 최대로 쌓아 놓고 있는 사내유보금을 활용하여 노동자의 임금 인상과 고용창출, 비정규직 정규직화,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한 장의 설문조사이지만 여럿이 모여 노동자의 한 목소리가 된다면 우리의 바람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임금인상, 당당히 요구합시다!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한명의 요구가 아닌 여럿의 요구가 된다면 사용자가 쉽게 거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겠지요.

